



부산남구공보

제 1256호 2023.11.2.(목)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선 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1358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공 람									
--------	--	--	--	--	--	--	--	--	--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3-1358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구정 홍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사회복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복지부서 개편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설 부서 : 홍보담당관(안 제4조의5)
- 폐지 부서 : 도시디자인과(안 제8조)
- 명칭변경 부서
 - 문화미디어과 → 문화예술과(안 제5조)
 - 여성아동과 → 가족친화과(안 제7조)
- 분장사무 조정
 - 공보 : 행정자치국 → 홍보담당관(안 제4조의5)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 도시(공공)디자인 : 안전도시국 → 행정자치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 607-4032 (Fax. 607-4019)
- 이 메 일 : madamekh@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정 홍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사회복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복지부서 개편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분청 기구 개편(안 제3조 ~ 제8조)

- 홍보담당관 신설(안 제4조의5)
- 국에 두는 부서(안 제5조 ~ 제8조)
 - 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 일자리환경국 :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생활보장과
-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 신설 부서
 - 홍보담당관(안 제4조의5)
 - 폐지 부서 : 도시디자인과(안 제8조)
 - 명칭변경 부서
 - 문화미디어과 → 문화예술과(안 제5조)
 - 여성아동과 → 가족친화과(안 제7조)

나. 분장사무 조정

- 공보 : 행정자치국 → 홍보담당관(안 제4조의5)
- 도시(공공)디자인 : 안전도시국 → 행정자치국(안 제5조)

4.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23. 11. 2. ~ 2023. 11. 12.

※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 단축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예정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 담당관”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실·과·담당관”을 “실·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감사실·미래성장담당관·행정자치국·일자리환경국·복지교육국·안전도시국”을 “기획감사실·미래성장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자치국·일자리환경국·복지교육국·안전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국정·시정·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
3. 구보 발행,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문화미디어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1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제30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29.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성아동과”를 “가족친화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과,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에서 제3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미디어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문화미디어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미디어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미디어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⑤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환경관리팀장”을 “탄소중립정책팀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중 “여성아동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일자리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 별표5 중 “문화미디어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구분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 실장·담당관·과장 ----- -- 실·담당관·과-----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담당관·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미래성장담당관·행정자치국·일자리환경국·복지교육국·안전도시국을 둔다.	제3조(실·담당관·국의 설치) ----- 기획감사실·미래성장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자치국·일자리환경국·복지교육국·안전도시국----- -----.
<신설>	제4조의5(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국정·시정·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 3. 구보 발행,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미디어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5조(행정자치국) ① ----- ----- 문화예술과----- -----.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8. (생략) 29.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30. 국정·시정·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 31. ~ 41. (생략)	② ----- -. 1. ~ 28. (현행과 같음) 29.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삭제> 30. ~ 40. (현행 제31호부터 제41호까지와 같음)
제7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주민복지과, <u>여성아동과</u> , 생활보장과를 둔다. ② (생략)	제7조(복지교육국) ① ----- <u>가족친화과</u>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u>도시관리과</u> ,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7. ~ 39. (생략)	제8조(안전도시국) ① ----- <u>도시관리과</u> -----. ②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6. ~ 38. (현행 제7호부터 제39호까지와 같음)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u>지역보건법 제9조에</u>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소관사무) ----- <u>지역보건법 제11조</u> -----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